

붙임1

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(요약)

| 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|----|---|---|--|--|--|
| | 생활방역 | 지역적 유행 단계 | | 전국적 유행 단계 | |
| 개념 | 생활 속 거리두기 | 지역적 유행 개시 | 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 | 전국적 유행 본격화 | 전국적 대유행 |
| 상황 |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|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| 1.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,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|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|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|
| 기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· 수도권 100명 충청·호남·경북·경남권 30명, 강원·제주 10명 미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· 수도권 100명 충청·호남·경북·경남권 30명, 강원·제주 10명 이상 -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· 수도권 40명, 충청·호남·경북·경남권 10명, 강원·제주 4명 이상 | <p>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유행권역에서 1.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, 확진자 수가 1.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.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~500명 이상이거나,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<p>※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,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~1000명 이상이거나, 2.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<p>※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,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</p> |

| 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생활방역 | 지역적 유행 단계 | | 전국적 유행 단계 | |
| 핵심 메시지 |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,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| 지역유행 시작,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| 지역유행 본격화,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,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| 전국 유행 확산,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·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| 전국적 대유행,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|
| 주요 방역조치(1.다중이용시설) | | | | | |
| 중점관리시설 |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| 이용인원 제한 강화,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|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,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|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집합금지 |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|
| 일반관리시설 |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|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| 이용인원 제한 강화,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|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,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| |
| 기타시설 | 정상 운영 | 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이용인원 제한 | |

| 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생활방역 | 지역적 유행 단계 | | 전국적 유행 단계 | |
| 국공립시설 | 경륜·경마 등 50% 인원 제한 | 경륜·경마 등 20% 이외 시설 50% 인원 제한 | 경륜·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% 인원 제한 | 체육시설, 경륜·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% 인원 제한 | 실내·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|
| 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포함) |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*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, 시설별 위험도·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| | | | 휴관·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|
| 주요 방역조치(2.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) | | | | | |
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, 의료기관, 약국,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 시설, 집회·시위장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 등 |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|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|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| |
| 모임·행사 |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, 방역수칙 의무화 | 1단계 조치 유지,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| 100인 이상 금지 | 50인 이상 금지 | 10인 이상 금지 |
| 스포츠 관람 | 관중 입장(50%) | 관중 입장(30%) | 관중 입장(10%) | 무관중 경기 | 경기 중단 |

| 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|---------|--|--|---|---|--|
| | 생활방역 | 지역적 유행 단계 | | 전국적 유행 단계 | |
| 교통시설 이용 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|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(국제항공편 제외) |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(항공기 제외) |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(항공기 제외) |
| 등교 | 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 | 밀집도 2/3 준수 | 밀집도 1/3 원칙 (고등학교 2/3) 최대 2/3 내에서 운영 가능 | 밀집도 1/3 준수 | 원격수업 전환 |
| 종교활동 | ※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| | | | |
| |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·식사 자제 권고 (숙박행사 금지) | 정규예매 등 좌석 수의 30% 이내로 제한 모임·식사 금지 | 정규예매 등 좌석 수의 20% 이내로 제한 모임·식사 금지 | 비대면,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·식사 금지 | 1인 영상만 허용 모임·식사 금지 |
| 직장근무 | 기관·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(예 1/5 수준) | 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(예: 1/3 수준) | |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|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|
| |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,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| | | |

붙임2

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

기본 원칙

- 실내 전체 +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
- 다만, 사회적 수용성,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

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

< 1단계 >

- 중점관리·일반관리시설, 집회·시위장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대중교통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, 고위험 사업장**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·행사

* 밀접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.4일에 중대본 보고·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

*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
< 1.5단계 >

- 중점관리·일반관리시설, 집회·시위장, 대중교통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, 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·행사, 실내·외 스포츠 경기장

< 2단계 >

- 실내 전체,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*

* 집회·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

< 2.5, 3단계 >

-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

< (참고) 과태료 부과 기준(11.13~) >

| | |
|--------|---|
| 부과기준 | 질병청장, 시·도지사, 시군구청장이 부과 |
| 예외 | 음식섭취, 수영, 목욕, 세수, 양치, 공연, 운동경기, 양가 예식 등, 만 14세 미만,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|
| 마스크 종류 | KF94, KF80, KF-AD, 수술용·천·일회용 마스크 |
| 과태료 | 위반당사자 10만원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|

붙임3 **단계별 세부방안**

1 **1단계 (생활 속 거리두기)**

1. 다중이용시설 관리

① (중점관리시설)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
| 구분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
|---|--|
| 유흥시설 5종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|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 ▶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| 노래연습장 |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
| 실내 스탠딩 공연장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실내체육시설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식당·카페 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 150㎡ 이상) | ▶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.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▶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-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-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

※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

-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11.13~)

② (일반관리시설)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주기적 환기·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* 상점·마트·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,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㎡ 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< 일반관리시설 >

| |
|---|
| ▲ 공연장 ▲ 학원(교습소 포함) ▲ 직업훈련기관 ▲ PC방 ▲ 오락실·멀티방 ▲ 목욕장업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영화관 ▲ 워터파크·놀이공원 ▲ 이·미용업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(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실내체육시설 |
|---|

③ (국공립시설) 소관 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
- 경륜·경정·경마장,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%로 제한

④ (사회복지이용시설)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,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

<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>

- ▶ (아동)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, 다함께돌봄센터 등
- ▶ (노인) 노인복지관, 경로당,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
- ▶ (장애인) 장애인복지관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
- ▶ (기타)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
2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

- ①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, ② 밀집도가 높거나, ③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*

*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

- 중점관리·일반관리시설, 집회·시위장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대중교통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, 고위험 사업장**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

* 밀집도 높은 시설은 방대본에서 10.4일에 중대본 보고·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

*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
② (모임·행사)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

-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,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 필요

< 협의 대상 모임·행사 >

- ▲ (행사) 집회·시위, 설명회(투자설명회, 재건축설명회 등)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
- ▲ 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문회, 야유회, 동호회, 워크숍
- ▲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- ③ (스포츠 관람)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관중 입장
- ④ (교통시설 이용) 마스크 착용 의무화
- ⑤ (등교) 2β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, 지역·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·과밀학교는 2β 유지 권고
- ⑥ (종교활동) 정규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, 모임·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
 -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
- ⑦ (직장근무)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5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
 -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- **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
 -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,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*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
 - 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
2 1.5단계 [지역적 유행 개시]

1. 다중이용시설 관리

① (중점관리시설)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, 클럽에서의 춤추기,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

*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,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
| 구분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
|--|---|
| 유흥시설 5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춤추기, 좌석 간 이동 금지 ▶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|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 |
| 노래연습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
| 실내 스탠딩공연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식당·카페 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 50㎡ 이상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▶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-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

※ **볼드체**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

② (일반관리시설)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(4㎡당 1명 등)

| 구분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실내체육시설 |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결혼식장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장례식장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목욕장업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영화관 | 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|
| 공연장 | 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|
| PC방 | 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| 오락실·멀티방 등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학원(독서실 제외)·교습소· 직업훈련기관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|
| 독서실·스터디카페 | 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|
| 놀이공원·워터파크 | ▶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|
| 이·미용업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|
| 상점·마트·백화점 (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 | ▶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|

※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
③ 국공립시설

-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%로 제한, 이외 시설은 50%로 제한

*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,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
- 다만,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

④ (사회복지이용시설)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
- 다만,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·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

2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

- 중점관리·일반관리시설, 집회·시위장, 대중교통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 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, 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, 실내·외 스포츠 경기장

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
② (모임·행사)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

-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,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 필요

< 협의 대상 모임·행사 >

- ▲ (행사) 집회·시위, 설명회(투자설명회, 재건축설명회 등)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
- ▲ 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문회, 야유회, 동호회, 워크숍
- ▲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- 다만, 구호, 노래, 장시간의 설명·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,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

*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㎡ 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
③ (스포츠 관람)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%로 관중 입장

④ (교통시설 이용) 마스크 착용 의무화

⑤ (등교) 밀집도 2β 준수

⑥ (종교활동)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% 이내로 인원 참여,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는 금지

-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

⑦ (직장근무)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

-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- **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

-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
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

- 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

3 2단계 (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)

1. 다중이용시설 관리

① (중점관리시설) 유흥시설 5종*은 집합금지,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

- * 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감성주점, 헌팅포차

-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'원스트라이크아웃제' 실시

| 구분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
|----------------|--|
| 유흥시설 5종 | ▶ 집합금지 |
|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,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 |
| 노래연습장 |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

| 구분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실내 공연장 스탠딩 공연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 |
| 시당.카페 (홀바우시청 제과점 이상 50㎡ 이상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,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·배달만 허용, ▶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▶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-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

※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,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·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
② (일반관리시설)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,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

| 구분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실내체육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| 결혼식장 | ▶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| 장례식장 | ▶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| 목욕장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영화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좌석 한 칸 띄우기 |
| 공연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좌석 한 칸 띄우기 |
| PC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, |
| 오락실·멀티방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학원(독서실 제외) ·교습소· 직업훈련기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, ▶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|
| 독서실스터디카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|
| 놀이공원·워터파크 | ▶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 |
| 이미용업 |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|
| 상점·마트·백화점 (300㎡ 이상) | ▶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|

※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,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·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
- ③ (기타시설) 마스크 착용 의무화
- ④ (국공립시설) 경마·경륜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,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% 이내로 제한
 - *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,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 - 다만,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
- ⑤ (사회복지이용시설)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 - 다만,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·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

2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-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
 -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,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·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
 - * (실내)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 내, 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
- ② (모임·행사) 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
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 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
<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- ▲ (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- ▲ 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
- ▲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※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
- ③ (스포츠 관람)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%로 인원 제한
- ④ (교통시설 이용) 마스크 착용 의무화, 버스,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- ⑤ (등교) 밀집도 1/3 원칙(고등학교는 2/3),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/3 내에서 운영 가능
- * 시·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
- ⑥ (종교활동)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% 이내 인원 참여,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는 금지
-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
- ⑦ (직장근무)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(1.5단계 조치와 동일)
-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- **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
-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
 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
 - 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

4 2.5단계 [전국적 유행 본격화]

1. 다중이용시설 관리

- ① (중점관리시설)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,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

| 구분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유흥시설 5종 | ▶ 집합금지 |
|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 ▶ 집합금지 |
| 노래연습장 | ▶ 집합금지 |
| 실내 스탠딩공연장 | ▶ 집합금지 |
| 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50㎡ 이상) | ▶ 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,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·배달만 허용, ▶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▶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-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-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

※ **볼드체**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

- ② (일반관리시설)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

| 구분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
|--------|--|
| 실내체육시설 | ▶ 집합금지 |
| 결혼식장 | ▶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| 장례식장 | ▶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| 목욕장업 | ▶ 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 |
| 영화관 |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 |
| 공연장 | ▶ 좌석 두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 |
| PC방 |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|

| 구분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오락실·멀티방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학원(독서실 제외) ·교습소· 직업훈련기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, ▶ 음식 섭취 금지 |
| 독서실스터디카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|
| 놀이공원·워터파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 |
| 이·미용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|
| 상점·마트·백화점 (300㎡ 이상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|

※ **볼드체**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,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·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
③ (기타시설) 이용인원 제한(4㎡당 1명 등)

④ (국공립시설) 경마·경륜·경정·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이용인원 30% 제한 유지

*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,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
- 다만,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

⑤ (사회복지이용시설)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
- 다만,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·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

2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

-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

* (실내)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 내, 개별공간 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

② (모임·행사) 5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
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

<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- ▲ (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- ▲ 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숍, 계모임 등
- ▲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※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50인 기준 미적용

③ (스포츠 관람) 무관중 경기

④ (교통시설 이용)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(국제항공편 제외), KTX·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(항공기 제외)

⑤ (등교) 밀집도 1/3 준수

⑥ (종교활동) 비대면 예배·법회·미사·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(참여인원 20명 이내)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는 금지

-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

⑦ (직장근무)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

-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
- **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

- 단,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

- 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

5 3단계 (전국적 대유행)

1. 다중이용시설 관리

① (중점·일반관리시설) 산업·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

- *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(예: 원격수업, 온라인 공연) 등은 가능

< 집합금지 제외 시설(예) >

| 구분 | 세부 업종·분류 |
|---------|--|
| 필수산업시설 | 물·전기·에너지·통신·우편·교통·석유·가스·항만·공항·안전·국방·치안·청소·건설·배송·유통·운수·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, 정부공공기관, 기업, 공장 등 |
| 거주·숙박시설 | 고시원, 호텔, 모텔 등 |
| 음식점류 |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등 |
| 상점류 | 마트, 편의점, 중소슈퍼, 소매점, 제과점영업 등 |
| 장사시설 | 장례식장, 화장장, 봉안시설 등 |
| 의료시설 | 병·의원, 요양병원, 약국, 의료기상사, 헌혈시설, 동물병원 등 |

-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·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

- *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, 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㎡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

- ② (국공립시설) 실내·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- ③ (사회복지이용시설) 휴관·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

2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

-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

* (실내)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 내, 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

② (모임·행사) 1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

- 다만,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, 장례식*의 경우 예외 허용

*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

③ (스포츠 관람) 경기 중단

④ (교통시설 이용)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(국제항공편 제외), KTX·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(항공기 제외)

⑤ (등교) 원격수업 전환

⑥ (종교활동)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는 금지

-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

⑦ (직장근무)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

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

**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

- 단,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

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